청소년
고용 사업주가
꼭 알아야 할 10가지



고용노동부
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

Conter



nts

알아두기

01. 청소년 고용연령
02. 청소년 사용금지 업종
03. 친권자(후견인)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류 비치
04.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
05. 근로시간
06.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
07. 휴일(휴가)
08. 최저임금 준수
09. 임금 지급 4대 원칙
10. 산재보험

01 청소년 고용연령

만1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합니다

-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어야 고용할 수 있습니다.

- 만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만13~14세 까지의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.

  ✠ 취직인허증은 각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, 법제처 홈페이지(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☞ '근로기준법 시행규칙' 검색 ☞ [서식9]다운로드

- 사업주는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, 「근로기준법」, 「청소년보호법」 등에서 청소년근로자에 대해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기준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.

  ◆ 각종 신청서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350으로!~



02 청소년 사용금지 업종

연소자(만18세 미만)는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시키면 안되요

도덕상으로나 보건상으로 유해·위험한 사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- 갱내(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의 안)
-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, 비디오방, PC방(종합 게임장), 노래방, 만화방, 전화방, 무도장 등
- 숙박업, 이용업,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, 티켓다방, 유독물 제조 · 판매업 등
-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, 호프집, 카페 등
- 고압·잠수 작업,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, 소각 또는 도살 업무
- 운전(조종)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(조종) 업무
- 유류(기름)를 취급하는 업무(주유소 제외)
- 2-브로모프로판 취급 또는 노출 업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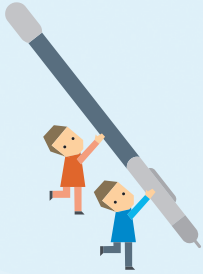
03 친권자(후견인)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류 비치

18세 미만자는 친권자(후견인)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

사업주는 이 서류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.

① 가족관계증명서, ②친권자(또는 후견인) 동의서를 사용자가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
- 친권자 동의서 서식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☞ 알림마당 ☞ 알려드립니다 ☞ '표준근로계약서' 검색 및 다운로드 ☞ 붙임 파일(표준근로계약서) 참조



0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

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

사업주는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 만일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❖ **근로계약서**

① 임금과 그 구성항목, 계산방법, 지급방법
② 근로시간
③ 휴일
④ 연차유급휴가
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

✠ 표준근로계약서 서식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
☞ 알림마당 ☞ 알려드립니다 ☞ '표준근로계약서' 검색
☞ 붙임 파일 다운로드

05 근로시간

하루 7시간, 1주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

-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면 하루에 1 시간, 1주일에 6 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.

  ※ 만 18세 이상 근로자는 하루 8시간, 주 40시간 근무가능합니다. (연장근로는 당사간 합의 하면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)

-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,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연소근로자(18세미만)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.

- 연장근로,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켰다면 시간당 임금의 50%를 각각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.(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.)



06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

휴일에 일하거나 연장·야간 근무를 했을 경우 50%의 가산임금을 주어야 합니다

-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라면 연장, 야간, 휴일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의 50%를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.

- 2014년 9 월 19일부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법정근로시간 이내(1주 40시간, 1일 8시간)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50%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
  –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허용시간(근로자 동의 후) :
  1주 12시간 이내 (18세 미만은 1주 6시간 이내)



07 휴일(휴가)

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(주휴수당)

-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 휴일(주휴일)을 주어야 합니다.
- 1주일에 2일 또는 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시간을 합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.
-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.
- 주휴일은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는 유급휴일입니다.



08 최저임금 준수

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

-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.
-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새로이 결정됩니다.
- 그렇다면 2014년과 2015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?
  -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,210원입니다.

  ※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,580원입니다.
-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.
-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했다면, 근로자는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만큼의 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될 수 있습니다.
- 다만 최저임금액은 건강보험료·고용보험료·산재보험료·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이므로, 이들을 공제한 후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

09 임금 지급 4대 원칙

현금으로 직접,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

- (통화지급 원칙) 임금은 현금(통장이체 가능)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- (직접지급 원칙)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.
- (전액지급 원칙)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
  - 교육비, 결근이나 지각, 업무상의 실수 등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등 어떠한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음
  - 첫달 월급 일부를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도 위법한 임금체불임
- (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)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.



-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,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.

-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  - 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계속일한 일수/365일
  - 평균임금: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
  -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☞ 민원마당 ☞ 모의계산 ☞ 나의 퇴직금 계산



10 산재보험

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

- 일하다가 다쳤다면 '산업재해'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, 청소년 근로자 불문하고 산재보험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.
-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따라서,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,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업무상 사고



①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
② 사무실이 아닌 휴게실, 화장실, 계단 등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
③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 중이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
④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(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, 작업 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 행위 중 사고, 시설물 결함, 관리 소홀, 건물 입구 쌓여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, 회식자리의 음주 사고 등)





업무상 질병

①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

②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
③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(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해 사망한 경우,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등)

◆ 산업재해 보험 관련 문의는
근로복지공단(국번없이 1588-0075)으로!



표준근로계약서

_____(이하 "사업주"라 함)과(와)_____(이하 "근로자"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계약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   ※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"근로개시일"만 기재
2. 근 무 장 소 :
3. 업무의 내용 :
4. 소정근로시간 : _시_분부터 _시_분까지 (휴게시간 : 시 분 ~ 시 분)
5. 근무일/휴일 : 매주 __일(또는 매일단위)근무, 주휴일 매주 __요일
6. 임 금
   - 월(일, 시간)급 : _____원
   - 상여금 : 있음 ( ) _____원, 없음 ( )
   - 기타급여(제수당 등) : 있음 ( ), 없음 ( )
     · _____원, _____원
     · _____원, _____원
   -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____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
   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지급( ),
  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( )
7. 연차유급휴가
   -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8. 근로계약서 교부
   -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9. 기타
   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

년 월 일

(사업주) 사업체명 : (전화 :)
주 소 :
대 표 자 : (서명)

(근로자) 주 소 :
연 락 처 :
성 명 : (서명)

연소근로자(18세 미만인자) 표준근로계약서

_____(이하 "사업주"라 함)과(와)_____(이하 "근로자"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계약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   ※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"근로개시일"만 기재
2. 근 무 장 소 :
3. 업무의 내용 :
4. 소정근로시간 : 시 분부터 시 분까지 (휴게시간 : 시 분 ~ 시 분)
5. 근무일/휴일 : 매주 __일(또는 매일단위)근무, 주휴일 매주 __요일
6. 임 금
   - 월(일, 시간)급 : _____원
   - 상여금 : 있음 ( ) _____원, 없음 ( )
   - 기타급여(제수당 등) : 있음 ( ), 없음 ( )
     · _____원, _____원
     · _____원, _____원
   -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____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
   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지급( ),
  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( )
7. 연차유급휴가
   -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8.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
   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: _____
   -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: _____
9. 근로계약서 교부
   -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, 제67조 이행)
10. 기타
    -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,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

년 월 일

(사업주) 사업체명 : (전화 :)
주 소 :
대 표 자 : (서명)

(근로자) 주 소 :
연 락 처 :
성 명 : (서명)

친권자(후견인) 동의서

○ **친권자(후견인) 인적사항**

성　　명 :
생년월일 :
주　　소 :
연 락 처 :
연소근로자와의 관계 :

○ **연소근로자 인적사항**

성　　명 :　　(만　　세)
생년월일 :
주　　소 :
연 락 처 :

○ **사업장 개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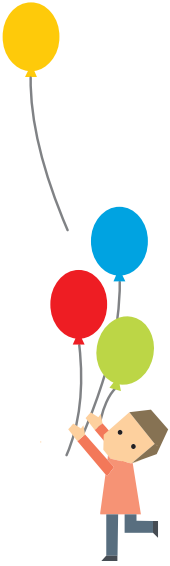
회 사 명 :
회사주소 :
대 표 자 :
회사전화 :

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_____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친권자(후견인)　　(인)

첨 부 : 가족관계증명서 1통




고용노동부
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